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 정박지 구역 변경 및 항만의 구성 변화에 따라 검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포괄하여 검역 장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인천항의 검역장소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점”을 “다음의 각 지점”으로 한다.

- 같은 표 평택·당진항의 검역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7도09분13.0초, 동경 126도25분48.0초

나. 북위 37도08분52.0초, 동경 126도25분48.0초

다. 북위 37도08분52.0초, 동경 126도30분46.0초

라. 북위 37도10분00.0초, 동경 126도30분46.0초

마. 북위 37도10분00.0초, 동경 126도27분17.4초

바. 북위 37도09분13.0초, 동경 126도27분17.4초

- 같은 표의 진해항의 검역장소란 중 “북위 35도04분00초, 동경 128도42분15초”을 “북위 35도04분11.1초, 동경 128도42분07.0초”으로 한다.

- 같은 표 통영항의 검역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북위 34도50분18.4초, 동경 128도26분52.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5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 같은 표 삼천포항의 검역장소란 중 “북위 34도51분56초, 동경 128도05분23초”을 “북위 34도52분07.2초, 동경 128도05분15.2초”으로 한다.

- 같은 표 옥포항의 검역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북위 34도54분13.2초, 동경 128도43분2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4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 같은 표 장승포항의 검역장소란 중 “북위 34도51분00초, 동경 128도45분00초”을 “북위 34도51분11.2초, 동경 128도44분52.0초”으로 한다.

- 같은 표 고현항의 검역장소란 중 “북위 34도55분15초, 동경 128도34분00초”을 “북위 34도55분26.2초, 동경 128도33분52.0초”으로 한다.

- 같은 표 동해·묵호항의 검역장소란 중 “동경 129도09분51초”을 “동경 129도10분15초”으로 한다.

- 같은 표 호산항의 검역장소란 중 “1. 북위 37도09분34초, 동경 129도22분59초, 2. 북위 37도12분12초, 동경 129도22분06초”을 “1. 북위 37도10분18초, 동경 129도22분48초, 2. 북위 37도12분12.03초, 동경 129도22분06.28초”으로 한다.

- 같은 표 삼척항의 검역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북위 37도26분09초, 동경 129도11분5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1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7도12분12초, 동경 129도22분0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15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 같은 표 옥계항의 검역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북위 37도37분40초, 동경 129도04분1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7도37분52초, 동경 129도04분5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 같은 표 속초항의 검역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북위 38도12분10초, 동경 128도36분2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3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8도12분02초, 동경 128도36분3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3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검역 장소(제5조제1항 관련)

구분	검역장소
부산항	1. 삭제 <2022. 6. 15.> 2. 북위 35도02분47.5초, 동경 129도03분3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1천852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3.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총톤수 3천톤 미만인 선박의 검역만 해당한다) 가. 북위 35도04분24초, 동경 129도01분37초 나. 북위 35도04분24초, 동경 129도02분00초 다. 북위 35도03분43초, 동경 129도01분23초 라. 북위 35도03분43초, 동경 129도02분00초 4.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5도01분13.1초, 동경 128도54분21.8초 나. 북위 35도00분38.0초, 동경 128도55분07.0초 다. 북위 35도00분19.1초, 동경 128도55분12.1초 라. 북위 34도59분38.2초, 동경 128도51분27.6초 마. 북위 35도00분10.4초, 동경 128도51분18.9초 바. 북위 35도00분22.1초, 동경 128도52분28.5초 사. 북위 35도00분52.6초, 동경 128도52분20.9초
인천항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7도20분19.75초, 동경 126도33분47.91초 나. 북위 37도22분2.58초, 동경 126도27분53.76초 다. 북위 37도31분46.72초, 동경 126도34분39.65초 라. 북위 37도31분48.74초, 동경 126도36분4.05초
평택·당진항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7도09분13.0초, 동경 126도25분48.0초 나. 북위 37도08분52.0초, 동경 126도25분48.0초 다. 북위 37도08분52.0초, 동경 126도30분46.0초 라. 북위 37도10분00.0초, 동경 126도30분46.0초 마. 북위 37도10분00.0초, 동경 126도27분17.4초 바. 북위 37도09분13.0초, 동경 126도27분17.4초

군산항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5도57분40초, 동경 126도27분52초 나. 북위 35도57분40초, 동경 126도25분52초 다. 북위 35도56분10초, 동경 126도25분52초 라. 북위 35도56분10초, 동경 126도27분52초
장항항	군산항 검역 장소와 같음
보령항	북위 36도11분3초, 동경 126도18분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800미터 원 안의 해수면
대산항	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7도03분59초, 동경 126도24분48초 나. 북위 36도59분59초, 동경 126도26분18초 다. 북위 36도59분00초, 동경 126도20분00초 라. 북위 36도59분55.2초, 동경 126도16분48.4초 마. 북위 37도00분24.2초, 동경 126도16분12.7초 바. 북위 37도00분58.3초, 동경 126도16분41.0초 사. 북위 37도01분52.3초, 동경 126도18분34.7초
태안항	북위 36도55분58.3초, 동경 126도13분40.7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 안의 해수면
목포항	북위 34도44분29초, 동경 126도20분2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3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완도항	북위 34도17분23초, 동경 126도49분0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여수항	1. 북위 34도39분11초, 동경 127도57분52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1천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4도44분36초, 동경 127도46분57초 나. 북위 34도44분36초, 동경 127도48분27초 다. 북위 34도42분41초, 동경 127도49분16초 라. 북위 34도42분41초, 동경 127도48분04초

광양항	여수항 검역 장소와 같음
마산항	북위 35도09분30초, 동경 128도36분0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3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진해항	북위 35도04분11.1초, 동경 128도42분07.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통영항	북위 34도50분18.4초, 동경 128도26분52.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5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삼천포항	북위 34도52분07.2초, 동경 128도05분15.2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6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옥포항	북위 34도54분13.2초, 동경 128도43분2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4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장승포항	북위 34도51분11.2초, 동경 128도44분52.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고현항	북위 34도55분26.2초, 동경 128도33분52.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울산항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5도27분48초, 동경 129도25분43초 나. 북위 35도27분48초, 동경 129도24분07초 다. 북위 35도25분33초, 동경 129도28분00초 라.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8분00초 마.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5분12초
포항항	1. 북위 36도07분15.8초, 동경 129도30분21.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8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6도05분37.3초, 동경 129도28분42.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다만, 도선대상선박으로써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 3. 북위 36도03분18초, 동경 129도24분35.7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400미터의 반경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다만, 도선면 제선박으로써 총톤수 3천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

동해·북호항	1. 북위 37도30분10초, 동경 129도10분1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7도32분15초, 동경 129도07분5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3. 북위 37도45분21.17초, 동경 129도00분45.7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65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호산항	1. 북위 37도10분18초, 동경 129도22분4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6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7도12분12.03초, 동경 129도22분06.2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65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삼척항	1. 북위 37도26분09초, 동경 129도11분5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1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7도12분12초, 동경 129도22분0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15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옥계항	1. 북위 37도37분40초, 동경 129도04분1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7도37분52초, 동경 129도04분5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속초항	1. 북위 38도12분10초, 동경 128도36분2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3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8도12분02초, 동경 128도36분3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3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제주항	1. 북위 33도32분25초, 동경 126도31분0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3도32분00초, 동경 126도31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3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서귀포항	북위 33도14분00초, 동경 126도34분4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2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인천 국제공항	북위 37도27분, 동경 126도26분의 지점(공항표준점)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청주 국제공항	북위 36도43분, 동경 127도30분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김포 국제공항	북위 37도33분, 동경 126도48분의 지점(관제탑)으로부터 190도 진북방향 402미터지점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무안 국제공항	북위 34도59분, 동경 126도22분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김해 국제공항	북위 35도11분, 동경 128도56분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대구 국제공항	북위 35도54분, 동경 128도39분에 위치한 대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양양 국제공항	북위 38도03분, 동경 128도40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제주 국제공항	북위 33도30분, 동경 126도29분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